

장애 학생 복지 운영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의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업무와 관련제도를 마련하는 장애 학생 복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 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 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 학생의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 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5. 장애 학생 지원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6. 장애 학생 차별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장애 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침의 개폐) 본 지침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